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갱생보호’ 를 ‘법무보호’ 로 용어 수정 등>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622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갱생보호의 연혁 및 보호관찰과의 비교	3
2.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용어 수정	7
3. 법무보호 지원 대상자에 대한 범죄·수사 경력 조회 요청 근거 마련 ..	17
4. 법무보호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신설	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석준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8.
3. 회 부 일 : 2024. 10.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호관찰법 상의 갇생보호는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들이 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함.

다만, 갇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전 근대적인 어감 및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권친화적인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갇생보호사업을 하는 기관이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법무보호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갇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함.

한편, 법무보호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무보호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 재범방지 및 효과적인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요청이 필요한 상태임.

이에 기존의 갱생을 법무보호로 수정하고, 법무부와 법무보호복지
공단에 법무보호 사업평가와 대상자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갱생보호의 연혁 및 보호관찰과의 관계

- 갱생보호는 형사처분 또는 「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¹⁾을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내에서의 사후보호의 한 형태임²⁾.
- 우리나라 갱생보호의 근대법으로서의 기원은 1942년의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조선사범보호사업령」에 의한 사범보호사업임. 이 후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종래의 ‘사범보호’가 ‘갱생보호’로 전환 되었음³⁾.

「갱생보호법」은 형의 집행종료, 집행면제, 집행유예, 선고유예, 공소제기 유예처분을 받은 자와 가석방 중에 있는 자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활독립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시켜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⁴⁾.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박상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제26권 제4호, 2016.

갱생보호의 방법으로는 통신·면접 또는 방문에 의하여 선행을 지도·장려하고 주거 및 교우 등의 환경을 조정하는 관찰보호와 취업·알선 및 숙박·식사 등을 제공하는 직접보호가 있었는데⁵⁾, 관찰보호는 1989년 「보호관찰법」 제정에 따라 보호관찰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보호대상자의 죄질,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보호관찰의 기능을 하였음.

- 보호관찰이 소년보호관찰에서 성인보호관찰로 점차 역할을 증대시키면서 갱생보호의 입지는 축소되었고⁶⁾, 1995년에는 갱생보호와 보호관찰이 범죄인의 사후관리와 재범방지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갱생보호법」을 「보호관찰법」과 통합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4) 「갱생보호법」(법률 제730호, 1961. 9.30., 제정) 제1조(목적 및 대상) 본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활독립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시켜 사회를 보호하고 개인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2.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면제를 받은 자
3. 가석방중에 있는 자
4.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
5.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6. 공소제기유예처분을 받은 자

5) 「갱생보호법」(법률 제730호, 1961. 9.30., 제정) 제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관찰보호는 통신·면접·방문에 의하여 선행을 지도·장려하고 계유하며 주거·교우 등 환경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직접보호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취업의 알선
2. 직업의 보도
3. 생산도구의 대여
4. 신원의 보증
5. 구호단체 또는 독지가의 위탁알선
6. 귀주알선
7. 부설사업장예의 취업
8. 단기의 숙박 또는 식사의 공여

6) 한영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현황과 개혁방안’, 교정담론 제15권 제2호, 2021. p.44.~45.

법률」(법률 제4933호, 1995. 1. 5. 공포)이 제정된 바 있음.

- 보호관찰과 갹생보호는 재범방지 등의 목적에 있어 동일한 측면이 있지만 보호관찰은 가석방 등 법적인 구속사유가 계속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처분임에 반하여, 갹생보호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제공되는 임의적인 사회복지적 처우로 정의할 수 있어 그 법적 성격이 상이하며,⁷⁾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보호관찰소는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기관이며 보호관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편성된 반면, 갹생보호 사업을 담당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 직원들은 민간인이며, 공단 이외에 7개의 민간법인이 갹생보호사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한편, 갹생보호 업무 자체는 법무부에 의한 예산 지원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 지므로 현행법 제14조와 제15조⁹⁾는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7) 한영선, 앞의 책, p.46.

8) 2025년 예산 기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원 예산 451억 100만원, 민간갹생보호법인 사업지원 예산 17억 5,500만원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갹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갹생보호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갱생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민간법인은 보호관찰소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실에 맞게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 중 갱생보호를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¹⁰⁾.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도와 원호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과 사회적 자립을 도움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갱생보호는 그 수행 방식이 달라 이를 하나의 법률에서 명확하고 정교하게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를 분법하는 내용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694)이 발의된 바 있음.

5. 범죄예방활동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10) 권수진 등,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연구용역 보고서, 2020. p.188.

2.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용어 수정

개정안은 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갱생보호(更生保護)’를 ‘법무보호’로 변경하고 ‘자립갱생’을 ‘사회복귀’로 바꾸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u>갱생보호(更生保護)</u>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법무보호</u> ----- ----- ----- ----- ----- ----- -----.
제3조(대상자) ① · ② (생략) ③ <u>갱생보호</u> 를 받을 사람(이하 “ <u>갱생보호</u>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u>자립갱생</u> 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무보호</u> ----- <u>법무보호</u> ----- ----- ----- ----- <u>사회복귀</u> ----- ----- ----- -----.
제4조(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u>갱생보호</u> 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운영의 기준) ----- ----- <u>법무보호</u> ----- ----- ----- ----- ----- ----- -----.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u>갱생보호</u>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 ----- <u>법무보호</u> -----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생략) 2. <u>갱생보호</u> 3. ~ 6. (생략)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보호관찰활동과 <u>갱생보호사업</u>을 지원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36조(<u>갱생보호사업자</u> 등의 원조와 협력)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원조와 제35조에 따른 응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기관, 제67조제1항에 따라 <u>갱생보호사업</u> 허가를 받은 자,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숙식 제공이나 그 밖의 적절한 원조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장 <u>갱생보호</u> 제1절 <u>갱생보호</u>의 방법 및 개시 제65조(<u>갱생보호</u>의 방법) ① <u>갱생보호</u>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 5. (생략) 6. <u>갱생보호</u>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8. (생략) 9. 그 밖에 <u>갱생보호</u>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 ----- ----- ----. 1. (현행과 같음) 2. <u>법무보호</u> 3. ~ 6. (현행과 같음) 제18조(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① -- ----- -<u>법무보호사업</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u>법무보호사업자</u> 등의 원조와 협력) ----- ----- ----- -----<u>법무보호사업</u>----- ----- ----- ----- -----. 제5장 <u>법무보호</u> 제1절 <u>법무보호</u>의 방법 및 개시 제65조(<u>법무보호</u>의 방법) ① <u>법무보호</u>----- -----. 1. ~ 5. (현행과 같음) 6. <u>법무보호</u>----- ----- 7. 8. (현행과 같음) 9. -----<u>법무보호</u>-----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제67조에 따라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u>갱생보호</u> 활동을 위하여 <u>갱생보호시설</u>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u>갱생보호시설</u>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u>갱생보호</u>의 신청 및 조치) ① <u>갱생보호</u>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u>갱생보호사업</u>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u>갱생보호</u>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갱생보호</u>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u>갱생보호사업자</u> 제67조(<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 ① <u>갱생보호사업</u>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갱생보호사업</u>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2. <u>갱생보호사업</u>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무보호</u>----- -----<u>법무보호</u>----- -----<u>법무보호</u>-----. ④ -----<u>법무보호시설</u>-----. 제66조(<u>법무보호</u>의 신청 및 조치) ① <u>법무보호</u>----- -----<u>법무보호</u>----- -----<u>법무보호</u>-----. ② (현행과 같음) ③ -----<u>법무보호</u>-----. 제2절 <u>법무보호사업자</u> 제67조(<u>법무보호사업</u>의 허가) ① <u>법무보호사업</u>----- ----- -----. ② -----<u>법무보호사업</u>-----. 제68조(허가의 기준) ----- -----<u>법무보호사업</u>-----. 1. <u>법무보호사업</u>----- 2. <u>법무보호사업</u>-----

현행	개정안
3. <u>갱생보호사업</u> 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3. <u>법무보호사업</u> ----- -----
제69조(보고의무) <u>갱생보호사업</u> 의 허가 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보고의무) <u>법무보호사업</u> ----- ----- ----- ----- ----- -----.
제70조(<u>갱생보호사업</u> 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0조(<u>법무보호사업</u> 의 허가 취소 등) ----- ----- ----- ----- ----- -----.
1. 부정한 방법으로 <u>갱생보호사업</u> 의 허가를 받은 경우	1. ----- <u>법무보호사업</u> ----- -----
2. <u>갱생보호사업</u> 의 허가 조건을 위반 한 경우	2. <u>법무보호사업</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이유 없이 <u>갱생보호사업</u> 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u>갱생 보호사업</u> 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 년 이상 <u>갱생보호사업</u> 의 실적이 없 는 경우	4. ----- <u>법무보호사업</u> ----- ----- <u>법 무보호사업</u> ----- ----- <u>법무보호사업</u> ----- -----
5. 6. (생략)	5. 6.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 에 따라 <u>갱생보호사업</u> 의 허가를 취 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을 하여야 한다.	제70조의2(청문) ----- ----- <u>법무보호사업</u> ----- ----- -----.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u>갱생보호사업</u>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u>법무보호사업</u> ----- ----- -----.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 ② (생 략)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① · ② (현 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③ 이사는 <u>갱생보호사업</u>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 (생략)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생략) ②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u>갱생보호사업</u>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3. (생략)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u>갱생보호</u> 2. <u>갱생보호제도의 조사·연구 및 보급·홍보</u> 3. <u>갱생보호사업</u>을 위한 수익사업 4. (생략)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① 공단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u>갱생보호사업</u>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86조(<u>갱생보호기금</u>의 설치) <u>갱생보호사업</u>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u>갱생보호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u>법무보호사업</u>----- ----- ----- -----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u>법무보호사업</u>----- ----- 2. 3. (현행과 같음) 제82조(공단의 사업) ----- ----- -----. 1. <u>법무보호</u> 2. <u>법무보호제도</u>----- ----- 3. <u>법무보호사업</u>----- 4. (현행과 같음)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① ----- ----- <u>법무보호사업</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u>법무보호기금</u>의 설치) <u>법무보호사업</u>----- ----- -----<u>법무보호기금</u>----- -----.

현 행	개정안
제4절 <u>갱생보호사업</u> 의 지원 및 감독	제4절 <u>법무보호사업</u> 의 지원 및 감독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갱생보호사업</u> 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95조(조세감면) ----- ----- <u>법무보호사업</u> ----- ----- -----.
제96조(수익사업) ① 사업자 또는 공단은 <u>갱생보호사업</u> 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6조(수익사업) ① ----- -- <u>법무보호사업</u> ----- ----- -----.
②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u>갱생보호사업</u>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u>법무보호사업</u> ----- -----.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생략)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u>갱생보호회</u>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 --- <u>법무보호회</u> ----- -----.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9조(벌칙) ----- ----- -----.
1. <u>갱생보호사업</u>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갱생보호사업</u>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1. <u>법무보호사업</u> ----- ----- <u>법무보호사업</u> ----- -----
2. <u>갱생보호사업</u> 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u>갱생보호사업</u> 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2. <u>법무보호사업</u> ----- ----- <u>법무보호사업</u> -----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 2008년 정부는 갱생보호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하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0314, 정부제출)을 제출한 바 있는데 당시 명칭 변경이유에 대하여 ‘갱생보호’라는 용어가 일본식 한자 용어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출소자들과 관계기관 종사자들의 거부반응이 있어 왔고, 일반인에게 의미전달도 불명확하여 공단의 대국민 홍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출소자 보호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¹¹⁾한 바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68호, 2008. 12. 26. 공포)이 시행되어 한국갱생보호공단의 명칭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변경된 바 있음.

-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사업 및 그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갱생보호’ 용어를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 등과 같은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하기를 권고한 바 있음¹²⁾.
-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현행법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법무보호’로, ‘자립갱생’이라는 용어를 ‘사회복귀’로 변경하는 것을 통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갱생보호’라는 제도를 ‘법무보호’라는 명칭의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임.

1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8. 11.

12) ‘2021년 갱생보호시설 방문 조사에 따른 법령 개선 등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2021 제14집, p.16.~32.

갱생의 사전적 정의는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 본디의 옳은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발전된 생활로 나아감¹³⁾’으로 표준어이고, 통용되고 있는 현행제도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갱생하다’를 ‘선도·교화하다’로 더 많이 쓰이고 쉬운 용어로 순화하도록 정비하라고 권고¹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갱생’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정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법 제14조 및 제15조¹⁵⁾에 따라 보호관찰소가 갱생보호에 대한 관장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갱생보호사업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7개 민간법인이 운영하고 있고 보호관찰소는 이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로 ‘갱생 보호 또는 법무보호’를 유지하는 경우 개정안 제55조의5¹⁶⁾에 규정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열번째판), 부록/정비 권고 용어’, 법제처, 2021., p.7.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호관찰소의 설치)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2. 갱생보호
3. ~ 6. (생략)

16) 안 제55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망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된 법무보호사업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도 관장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서 ‘갱생보호 또는 법무보호’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삭제하는 경우에는 안 제66조17)의 법무보호 대상자와 관계기관이 법무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보호관찰소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 또한, 현행법 제95조18)가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19)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며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수정할 경우,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을 두어 해당 자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17) 안 제66조(법무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법무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법무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인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갱생보호를 분법하는 내용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9694)도 ‘갱생보호’를
‘법무보호’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한 바 있음.

3. 법무보호 지원 대상자에 대한 범죄·수사 경력 조회 요청 근거 마련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법무보호 지원대상자의 재범여부 조사 및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법무보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년 동안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은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 관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²⁰⁾에서 명시하고 있음.

현 행	개정안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생략) <신설>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법무보호지원이 제공된 사람의 재범여부를 조사하고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무보호지원이 개시된 때부터 3</u>

2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 라. 집행유예의 취소
 -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현 행	개정안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현행법 제55조의4제1항²¹⁾은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 조사와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보호관찰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²²⁾은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²³⁾은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각 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2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원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소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2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위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법무부장관이 그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안처분 관련 법률에서 보안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보안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이들의 재범현황을 파악하여 재범예방을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도 법무부장관이 법무보호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법무보호제도 수혜자들의 재범률 확인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고 재범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갱생보호는 강제적인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적인 처우로 보호관찰 등 다른 보안처분과는 법적 성격이 상이한 측면을 감안하여, 법무보호 지원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의 제공 요청의 필요성 및 다른 입법례²⁴⁾처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24)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2.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현행법 제55조의4는 보호관찰 관련 장으로 조문의 위치를 제5장 갱생보호 중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에 제98조의2로 신설하여 규정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현행법은 보호관찰소의 장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각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²⁵⁾.

2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① 공단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무보호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신설

개정안은 법무보호 지원자들이 법무보호사업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열람 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이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임.

현 행	개정안
<신 설>	제55조의5(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열람, 전산망 이용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법령상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민간갱생보호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와 보호방법을 결정해야 하는데²⁶⁾,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 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죄질, 연령, 학력, 가정사정, 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함²⁷⁾.

○ 갱생보호의 방법은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가족지원 등²⁸⁾임. 창업지원의 경우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2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제67조제1항에 따라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1조에 따른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① 갱생보호대상자로서 갱생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호관찰소의 장,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이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에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갱생보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 및 처분의 내용, 신상관계, 갱생보호대상자가 희망하는 갱생보호방법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이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갱생보호의 필요 여부와 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서 및 갱생보호대상자와의 상담 등에 의하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전과의 죄질·연령·학력·가정사정·교우관계 및 자립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①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임차보증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주거지원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대상자에게 임차주택을 최장 10년간 저렴하게 공급하는 등 갱생보호의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 지원인데,

현행 갱생보호 제도는 출소자가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이들을 갱생보호 대상자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경제력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자료의 열람 등 협조²⁹⁾를 통해 갱생보호 신청을 한 대상자들의 경제력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 선정이 보다 용이해지고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다 적합한 지원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행법 제66조는 대상자 등이 ‘보호관찰소장, 민간갱생보호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29) 법무부 소속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사업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법률구조법」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받은 자는 보호의 필요성과 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공단만이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장이나 민간갱생보호사업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갱생보호의 적정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소는 현재 갱생보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간갱생보호사업자에 대해 자료요청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며,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에게 이러한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및 이를 인정할 경우 비밀누설 금지 규정(처벌 포함)등 필요성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또한 민간갱생보호사업자를 대신해 공단이 자료요청 및 대상자 확인·선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참고로, 「체육인복지법」은 비영리법인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 받은 자료·정보의 누설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³⁰⁾.

○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직원은 현행법 제93조³¹⁾에 따라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형법 제127조³²⁾에 따른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해당 자료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³³⁾’에 해당할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형법 제317조³⁴⁾에 따라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³⁵⁾을

30) 「체육인복지법」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달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달기관(이하 “전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제24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달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또는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3) 대법원은 일관되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어 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시함.

조균석 등, ‘형법주해 각칙2’, 박영사, p. 99.

34)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누설하는 죄인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의사 등 해당 조항에 열거된 사람만 해당³⁶⁾되므로 유사입법례³⁷⁾와 같이 임직원의 제공 자료 누설 금지 규정과 이에 대해 별도의 벌칙을 둘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유사입법례³⁸⁾와 같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범위를 소득·재산 및 인적사항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형과 같다.

35) 본죄의 비밀은 본인의 신상이나 가족관계, 직업, 과거행적, 현재의 생활관계 등 개인적 사정과 관련되는 사실이어야 한다.

조균석 등, ‘형법주해 각칙7’, 박영사, p. 475.

36) 조균석 등, ‘형법주해 각칙7’, 박영사, p. 463.

37) 「법률구조법」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기초연금법」 제11조(조사·질문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무부는 제1항의 “관련 자료”는 “국세·지방세·소득·재산,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출입국·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75